취재보도와 편집, 어떻게 할 것인가
-범죄 혐의 보도를 중심으로-

김진원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기자

I. 서언

요즈음 기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자신이 쓴 보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도 직접 취재해 작성한 기사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이 청구된 적이 있는데 해당 기자는 기사 때문에 명예훼손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못지 않게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니다. 중재위 단계에서 적절한 수준의 정정보도를 해주고[1],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일단락되면 대단히 양호하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정정보도와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법정 비화되는 게 보통이다. 형사 고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동원되나, 당사자들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언론사와의 본격적인 다툼에 돌입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다.

소가 제기되면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해당 기자는 중재 신청 단계에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2] 대개 소속 언론사와 함께 공동 피고로 소가 제기돼 회사가 변호사를 선임, 대응에 나서는 게 보통이나 원인제공자의 위치에 있는 기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엄청난 심적·물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변호사를 도와 기일마다 재판을 준비해야 함은 물론 불리한 판결에 대비한 당사자와의 화해 노력 등이 모두 해당 기자의 몫이다. 중간에 화해가 안돼 판결까지 가게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재판이 기자와 언론사의 패소로 끝나고 해당 기자의 잘못으로 드러날 경우 회사에 따라 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해당 기자의 징계위원회 회부 등 매우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3]

언론사로서도 손배소 피소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함은 물론 패소로 확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돼 현실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위자료 액수가 갈수록 고액화되고 있어 명예훼손 소송의 패소가 언론사에 지우는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적지 않은 보험료를 물어가며 특별보험에 들고 있는 언론사도 점차 늘고 있다. 잦은 정정보도로 독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피고의 승소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어 언론사로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1) 최근 들어 신문사 등 언론사의 정정보도는 이전에 비해 매우 관대해진 측면이 있다. 내용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소명하면 곧바로 정정보도를 받아 내는 게 가능하다. 중재위의 중재단계에서도 당사자의 주장에 무리가 없으면 정정보도 내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

2) 당사자들의 소 제기 동기 중엔 기자를 괴롭혀야겠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직은 기자와 배상 능력이 있는 언론사를 함께 걸거나 언론사와 편집국 간부 또는 언론사만을 피고로 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해당 기자만을 상대로 하는 손배소가 활성화될 경우 회사가 이를 언론사에 대한 손배소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떠맡고 나서지 않는 한 기자로서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모 신문사 기자의 경우 패소 판결후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하는 바람에 이를 이행한 후 언론사를 옮기기도 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기자와 언론사로서는 명예훼손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소가 제기된 후 정정보도 기사 게재 등을 조건으로 당사자와의 협상이 성사돼 소가 취하되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아예 소 제기의 빌미를 없애는 게 상책이다.[4)]

다만 명예훼손을 예방하되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특종의 추구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과제로 남는다.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피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언론의 역할이 위축되어선 곤란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좀 꺼림직하다 싶은 기사는 쓰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방이 아니라 기사의 포기라고 해야 한다. 명예훼손의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 보도의 영역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하에서는 취재 일선에서 특히 시비가 많은 범죄 혐의에 관한 보도를 중심으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분석, 소송을 피해 가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 법원의 판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언론의 취재 현실을 조명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법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범죄 혐의 보도는 관련 당사자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판단이 형성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인데다 수사와 재판의 진전에 따라 나중에 혐의가 벗겨지는 경우가 많아 명예훼손 책임과 관련,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판결 중엔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인 상당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부정한 경우도 많다. 또 공공성·공익성도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같은 사안임에도 기사의 표현 정도에 따라 언론사마다 책임의 경중이 다른 경우도 없지 않다. 무엇이 어떻게 문제돼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사례별로 따져보기로 한다.

II. 손해배상책임과 위법성 조각사유

주지하다시피 신문 또는 방송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5)] 이 책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보통의 여러 요건을 다 챙겨 보아야 하는데 특히 판례상 인정되는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따져 보아야 한다. 즉 법원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보도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도 당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거의가 이 위법성 조각사유의 해당 여부에 따라 결말지어진다고 보아도 된다.[6)] 보도의 공공성·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판단 요소들인 것이다.

III. 전문(傳聞) 보도와 진실성

범죄 혐의에 관한 보도를 둘러싸고 명예훼손 시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일종의 전문보도의 형태로 이뤄지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 또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포착된 범죄 혐의 관련 보도는 대개 "~란 혐의를 받고 있다"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다. 여기서 혐의를 받

---

4) 기사의 당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쉽지 않고, 아무리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오보로 인한 피해가 말끔히 치유된다고 할 수 없어 명예훼손의 예방이야말로 바라는 바라고 할 수 있다.

5)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의 구제방법은 손해배상책임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빈번하게 동원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6)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로 굳어져 명예훼손에 관한 거의 모든 판결에서 이 법리를 중심으로 책임 여부를 가려 나가고 있다.

고 있는 자체는 사실이나 그 혐의 내용이 나중에 무혐의 또는 무죄 등으로 판가름날 경우 진실한 보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자체보다도 혐의 내용이 진실하여야 비로소 진실한 보도가 된다"며 원칙적으로 진실성을 부정한다.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여부로 위법성 조각 여부를 따질 일이지 진실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7]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절도와 업무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해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모 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도가 '…혐의를 받고 있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원고가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회사 기밀을 누설한 것이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그 신문 보도가 진실이라는 입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며 진실성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과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다.[8] 다만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했다. 반면 서울고법은 "기사의 요지가 검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구속하였고, 그 혐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할 방침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임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보도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범죄 혐의에 관한 보도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전문보도의 형태로 이루어진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의 "한통 노조의 북한조종설" 발언 관련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서도 진실성을 인정,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한 것이 있다.[9] 한국통신 노조와 집행부 간부 등이 박홍 전 총장과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원고 노동조합원들이 명동성당, 조계사에서 농성한 것이 북한의 조종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별 근거가 없다"고 전제한 후 "피고 박홍이 한 발언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듣는 사람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춰 볼 때 피고 중앙일보가 박홍이 그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논평 없이 그대로 게재한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보도라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요컨대 하급심에서는 전문 보도와 관련, 피전달 내용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기사 내용의 전체적인 인상과 인용 정도, 기사의 표현 방법 등을 따져 진실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없지 않으나 대법원은 범죄 혐의 보도에 있어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진실성을 부정하고 상당성으로 위법성 조각 여부를 따지려는 태도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기자들 중에는 피의자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 아니냐는 생각에 수사 상황에 대한 보충 취재 없이 만연히 기사를 송고하고 데스크도 그대로 출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 주의가 요망된다.

IV. 상당성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논란되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 상당성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적시된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10] 어느 경우에 상당성이 있는지 한마디로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상당성이 부

---

7) 물론 진실한 보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혐의 보도가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는 거의가 나중에 무죄 판결 등으로 결말이 나 혐의를 벗은 사건들이다.

8) 대법원 97다10215, 97다10222(99. 1. 26)판결, 『국내언론관계판결집』 7집, p.123.

9) 서울고법 97나23466(98. 1. 21)판결, 『국내언론관계판결집』 6집, p.265.

10) 대법원 96다36395(98. 5. 8)판결 등 상당성이 문제된 거의 모든 판결이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취지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언론관계판결집』 6집, p.155.

정된 경우와 인정된 경우로 사례를 나눠 법원의 판단과 취재 현실이 어떻게 다른 지 비교해 본다.

1. 부정된 경우

1)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범죄 혐의 보도

지난 4월, 1심 판결이 선고된 가수 조덕배 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 보도 관련 사건은 영장이 신청되기 전 긴급체포된 단계에서의 보도가 문제된 경우다.[11] 야근 기사로 보도됐으나 기사는 비교적 충실하게 작성됐다는 평가가 많다. 때문에 조씨의 승소로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언론계에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당황해 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다.

판결 내용을 보면 실명이 적시돼 보도됐으나 공공성과 공익성은 인정됐다. "당사자인 조씨가 유명 연예인으로서 그가 대마초를 흡연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감정 결과 조씨의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대마초 흡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조씨는 긴급체포된 지 이틀 후 석방됐고, 1달 반 정도가 지나 검찰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따라 진실하지 않은 보도가 돼 상당성 여부가 위법성 판단의 관건이 됐는데, 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조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상당성을 부인한 법원의 논리는 기사의 내용에 비춰 취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압축된다. 1차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조씨가 한약 복용 사실을 주장하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었던 점, 호텔 방에서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고 제보돼 같이 입건된 박모 씨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에선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은 점, 조씨의 동종 전력이 4차례나 된다는 사실은 일반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조씨가 대마초를 피웠을 것이라는 인상을 줄 것이므로 이를 들추어 보도하려면 더욱 더 객관적인 근거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춰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담당경찰관과의 전화 통화로 기사 내용을 확인했으니 상당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담당경찰관과의 전화통화만으로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비해 기사의 내용은 제목이 혐의를 단정짓는 표현으로 돼 있는데다 본문 중에 나오는 4차례의 동종 범죄 경력 소개 등이 맞물려 단순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기 보다는 이번에도 대마초를 피웠을 것이란 인상을 독자들이 받을 것으로 보여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언론의 취재와 기사 작성, 편집 실태에 비춰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제목이다.[12] 신문과 방송의 기사 제목은 취재기자가 써 온 기사를 보고 편집자가 내용을 압축해 독자의 주의를 끌만한 보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뽑는 게 현실이다. 물론 여기에도 한계가 있지만 말이다. 이어 제목의 강한 표현이 초래할 지 모르는 내용 예측의 일탈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취재기자가 신중한 표현으로 다듬어 쓴 기사 본문을 읽으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목이 초래할 지 모르는 오해의 우려를 본문이 해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조씨 관련 기사에 나타난 제목의 단정적 표현도 이런 메카니즘의 산물이 아닌가 한다. 소가 제기된 6개 언론사의 기사 제목이 거의 비슷하게 뽑힌 게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본문은 한 매체를 빼면 혐의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곳이 없다. 긴급체포돼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일보는 영장 신청 방침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잘못 보도하긴 했으나 "한약을 복용해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라는 조씨의 항변도 싣고 있다. 문화방송은 "이번 만큼은 절대 아니라고 조씨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조씨측 얘기를 덧붙이고 있다. 독자들 중에도 신문이나 방송 기사의 제목이 이런 과정을 거쳐 정해지고, 본문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도록 역할이 나뉘어 있다는 것

11) 서울지법 2000가합64132(2001. 4. 25)판결, 『언론중재』, 2001 여름호, p.128.

12) 이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매체가 "가수 조덕배 씨 또 대마초" 등의 단정적 표현으로 제목을 뽑고 있다.

을 알고 있는 사람이 꽤 되지 않을까. 법원은 또 동종 전력을 들춘 것을 문제삼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기사를 쓰면서 이 내용을 빼고 송고한 기자가 있다면 그 기자야말로 취재가 부족하다고 데스크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대목이다. 기사를 내용이 알차고 풍부하게 작성하는 것은 독자의 알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기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들춰 보도하려면 더욱 더 객관적인 근거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지적은 그 의미도 명확하지 않고, 동의하기도 어렵다. 연장선상에서 독자들이 조씨가 단순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기 보다는 이번에도 또 대마초를 피웠을 것이란 인상을 받았을 것이란 지적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목의 표현은 본문과 조화를 이뤄가며 뜻을 새기는 게 보통이라는 점과 독자들의 인식 수준 또한 재판부가 지적한 우려를 앞서 나갈 만큼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은 언론사마다 차등을 두었다. 본문에서도 단정적인 표현을 쓴 A사와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고 적시, 실형 전과는 한차례에 불과한 전력을 잘못 보도한 B사에 대해서는 위자료 액수를 1천만원으로 하고 중앙, 한국, 세계일보와 문화방송에 대해서는 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담당경찰관의 요청으로 기자들이 공동으로 브리핑을 듣고, 배포된 보도자료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으나 상당성이 부정된 경우도 있다. 남편을 청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유모 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그렇다.[13] 이 사건은 실명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공공성을 부정, 상당성을 따질 실익이 없었지만 서울고법은 상당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공성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마당에 상당성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며 서울고법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자들이 취재에 나서게 된 것은 서초경찰서의 담당 형사계장이 서초서를 담당하는 강남서 기자실에 전화를 걸어 취재를 요청한 게 계기가 됐다. 서초서는 기자들이 상주하지 않고 강남서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담당한다.

기자들이 모이자 담당경찰관이 유씨의 살인예비음모 피의사실과 수사 경위 등을 영장 신청 방침과 함께 설명했고, 피의사실의 요지가 기재된 보도자료와 수사기록을 열람한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공보관으로서의 직무 또는 권한이 부여된 여부가 불분명한 경찰관이 아무런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침이 없이 기자실에 전화를 걸어 취재를 요청하였다면 이는 공식발표라 할 수 없어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발표를 할 수 있는 경우란 사건의 국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국민 대다수의 간절한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이런 요청 때문에 경찰의 공보에 관한 규율은 법령에 의한 공보관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공식적인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형식으로, 기자는 기타 일반인에게 수사의 경과나 내용 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경찰 등의 일선 취재 관행에 비춰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 우선 공보관으로서의 직무 또는 권한이 부여된 여부가 불분명한 경찰관이 아무런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자실에 전화를 걸어 취재 요청한 것이어 공식발표라 할 수 없다고 한 대목이다. 공식발표의 경우에만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논리도 상당성이 약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언론의 입장에서 볼 때 왜 공식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형 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우 수사본부장이나 공보관이 그 결과를 직접 발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속성상 해당 부서에서 그때그때 자료를 내고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경우도 꽤 된다. 설명 또는 발표 장소는 기자실이 될 수도 있고 경찰관 방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일선 경찰서에선 해당 부서별로 범인 검거 보고서 등을 수시로 기자실에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오히려 기획 수사 등

---

13) 대법원 96다17257(98. 7. 14)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6집, p.200, 서울고법 95나24946(96. 2. 27)판결, 『국내언론관계판결집』4집, p.218.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후자가 보다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검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언론에서 말 그대로 공보관 등이 공식발표한 경우와 차이를 두어 기사 비중 등을 달리 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둘 다 훌륭한 취재의 단서가 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만 해도 서초서 담당 경찰관이 피의사실의 요지가 담긴 보도자료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 보도자료나 재판부가 지적한 공식발표 때의 보도자료나 언론에선 똑같이 취급한다. 일선 경찰서엔 상시적으로 공보관이 있는 곳도 거의 없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1개 경찰서가 있는 서울의 경우 경무과 소속으로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긴 하나 이들의 역할은 기자들의 취재 지원과 보도 분석 등 총무 업무로 역할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 수사 결과에 대한 설명 등은 해당 부서가 맡는 경우가 많다. 결재 문제도 지적됐는데 해당 부서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사 결과 설명 등에 관한 재량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부서별로 수사 결과 등에 대한 자료가 수시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재 또는 위임 여부는 경찰 내부의 문제이지 기자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1심을 맡은 서울지법은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동아·조선·한국일보 기사의 상당성을 인정했다.

2)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범죄 혐의 보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범죄 혐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명예훼손 시비가 많이 일어난다. 법원은 경찰 단계에서 문제된 경우와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검사는 경찰을 지휘하며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다 공소 제기 후엔 피의사실을 공표해도 죄를 물을 수 없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등 경찰에서와는 사정이 다른 부분도 없지 않다.

우선 기자들의 사실 확인 요청을 받은 부장검사가 기자실을 찾아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발표한 데 대해 공식적인 의미를 부여, 그대로만 보도하였다면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참고인 조사만 받고 형사 입건조차 되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처럼 허위의 혐의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14]인데, 2심과 1심을 맡은 서울고법·서울지법은 기사 내용이 과장됐다며 상당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반대로 과장되지 않았다면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가 전제로 깔려 있다. 또 기자들의 요청으로 부장검사가 기자실을 찾아와 수사 내용을 설명한 것을 수사기관의 공식발표로 인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브로커 역할 혐의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는 부장검사의 구두발표를 토대로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면서 발표와는 달리 원고를 브로커라고 적시하는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듯 보도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발표 범위를 초과하여 과장 또는 단정적인 기사를 보도한 점에서 피고가 수사기관의 발표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특히 수사를 받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 한 명의 이름을 대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부장검사가 담당검사에게 전화로 이를 파악해 알려 주었으나 기자들이 이 사람의 혐의를 임의로 못박아 보도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는데 주의를 요한다 하겠다. 기자들은 부장검사의 구두 발표 내용에 원고가 브로커라든가 원고에 대한 브로커 혐의가 인정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견 모델 진희경 씨가 문화일보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사건[15]은 엄밀히 말해 피의자의 혐의 내용에 관한 진실성과 상당성이 문제된 것은 아니다. 범죄 혐의 내용에서 제3의 사실을 찾아내 일반 보도기사로 게재됐으나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상당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고등법원에선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 원고인 진희경 씨의 청구

14) 서울고법 96나7849(96. 9. 11)판결, 서울지법 94가합17753(95. 12. 22)판결, 『국내언론관계판결집』 5집, p.164.

15) 대법원 96다36395(98. 5. 8)판결, 『국내언론관계판결집』 6집, p.155.

가 기각됐으나 대법원에서 상당성이 부정돼 고법 판결이 뒤집힌 것으로 유명하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문화일보에서 법조를 출입하는 한 기자가 사기죄로 기소된 박모 씨의 공소장을 열람하던 중 박씨에게 속은 술집 주인 등의 부탁을 받고 그를 접대한 여자들 중에 김혜선, 진희경, 최지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 취재에 나섰다. 담당검사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 김혜선이 유명 탤런트인 김혜선과 동일 인물이고 진희경도 중견 모델이라는 확인을 받고 수사 기록을 열람했다. 그 결과 박씨가 자신을 접대한 이모 양은 예명이 '진희경'이라는 영화배우인데 영화잡지에 실린 원고 진희경씨의 사진을 통해 이를 확인했고, 그녀를 소개해 준 음식점 주인 역시 그녀가 대한항공 청사에 세워진 광고탑 모델 3명 중 왼쪽에 있는 여자라고 소개하였다는 내용의 박씨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박씨가 첨부된 원고의 사진을 지칭하며 원고가 자신을 접대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 또한 진술서에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 기자는 이를 토대로 "중견 모델 진모 양 등이 음식점 주인 등의 소개로 돈을 받고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씨를 호텔과 여관을 돌아다니며 접대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박씨를 접대한 사실이 전혀 없는 진양은 문화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심리 결과 박씨를 접대한 이양의 예명이 진양의 이름과 우연히 일치해 이 같은 혼동이 생긴 것으로 드러나 기자가 이양이 진양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여부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서울고법은 상당성을 인정, 문화일보와 기자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먼저 박씨 사기사건에선 접대부들의 신원이 초점이 되지 않아 박씨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 담당검사는 원고를 비롯한 관련 연예인들이나 그들을 소개해 준 술집 주인 등을 소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수사검사는 박씨의 진술을 근거로 기자에게 연예인들의 접대행위를 확인해 준 점, 기자는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자신이 열람한 수사 기록만을 근거로 원고를 비롯한 연예인들이나 소개인들에 대한 사실확인을 아니함은 물론 박씨가 언급한 대한항공 광고탑 모델에 관한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한 사실 등을 지적했다. 이어 "기자가 열람한 수사기록은 박씨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수사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 역시 관련 연예인들이나 소개인들에 대한 수사결과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닌 박씨의 진술만을 근거한 것으로 그다지 신빙성이 높다 할 수 없으므로 기사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 내지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들이 많은 발행부수를 가진 일간지에 원고 등 관련 연예인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관련 연예인들이나 소개인들에 대한 사실 확인 또는 광고탑 모델의 신원 확인 등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박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검토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 점에서도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언론의 취재 현실에 비춰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범죄 혐의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있어 수사 검사의 말 한마디는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가까울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열심히 검사실도 드나들고, 검사들과 스무고개하듯 선문답도 나눈다. 검사실이 기자들에게 항상 개방돼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검찰의 수사 기록을 열람한다는 것은 기사 거리가 듬뿍 담긴 잘 정리된 문서를 보는 것 이상으로 기자로서는 흥분할 일이다. 검사앞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도 하지 않는가. 이 점에서 이 기사를 작성한 문화일보 기자는 취재 수완이 대단하다고 할 만하다. 대법원은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을 나무라는 데 검찰 출입기자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자 할 때 그 최고 우선 순위 대상은 수사 검사라고 해야지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는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 검사와 당사자의 말이 다르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대부분의 기자는 검사의 말을 앞세우고 당사자의 부인은 반론으로 처리하려 할 것이다. 요즈음 언론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관련 당사자의 반론을 받도록 하는 것도 사실확인보다는 기사의 균형 유지와 나중에 문제되었을 때의 방어용인 측면이 강하다. 수사 검사의 확인과

수사기록만으로는 미흡하다며 당사자 확인까지 요구하는 것은 법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사실을 확정한 후 기사를 쓰라는 주문이어서 일간신문 보도의 상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잣대로는 지나치지 않나 싶다. 서울고법은 기사 내용에 관한 취재원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며 상당성을 인정했다.

2. 인정한 경우

나중에 혐의를 벗은 범죄 혐의 보도 중 법원에서 상당성이 인정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법원의 태도가 경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상당성을 인정한 판결의 취지는 대개 수사기관의 발표 내용을 각색하거나 덧붙임 없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인용, 보도한 경우로 압축된다.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절도와 업무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해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모 씨 등 2명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 확정된 사건도 이 같은 이유로 상당성이 인정된 경우다.[16]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을 보자. 조선일보는 이모 씨가 구속된 다음 날짜에 "회사기밀 유출 간부 구속"이라는 제목과 "경쟁사에 자사 유통조직 등 알려"라는 소제목 아래 검찰이 이씨를 구속하고 박모 씨를 불구속했다는 내용과 혐의 내용, 앞으로의 수사 방침 등을 사회면에 보도했다.[17] 또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취재 경위를 보면 취재기자가 법원에서 구속영장 사본을 열람하여 원고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취재를 요청, 다른 기자들과 함께 이씨 등에 대한 피의사실이 요약, 정리된 자료를 배포받고 검사가 발표하는 수사경위를 들은 다음 이러한 취재 자료에 의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하자 박씨가 항소를 포기해 항소심 이후는 이씨 혼자 법정 다툼을 계속했다.

이런 전제 아래 대법원은 "기사의 취재원이 수사를 직접 담당한 검사인데다 사적 정보가 아니라 소정의 절차에 의한 발표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신뢰도가 높고, 더욱이 이씨는 구속되어 있어 직접 취재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아니하였던 점, 기사는 제목 등에 있어 이씨의 범행을 단정하는 듯한 표현이 사용되어 있으나 본문과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검사로부터 취재한 사건 경위와 수사의 방향 및 그로부터 배포받은 수사자료를 기초로 취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의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검사로부터 취재한 피의사실을 기사화하는 경우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아니하고 보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의 취재 관행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원래 1심과 2심은 혐의가 벗겨졌더라도 기사는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진실성은 부정하되 상당성을 인정,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법원의 판시 내용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범죄 혐의 보도에 대한 판단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앞서 소개한 조덕배 씨 사건에서 서울지법은 제목의 단정적인 표현을 부정적인 요소로 파악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본문과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취재 내용이 수사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작성돼 있다"고 언론에 유리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 살인예비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유모 씨 등 사건에선 기자들이 경찰의 요청으로 담당경찰관을 찾아가 보도자

16) 대법원 97다10215/97다10222(97. 1. 26)판결, 『국내언론관계판결집』 7집, p.98.

17)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지검 형사 4부 박상길 검사는 22일 자신의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스카우트되기 위해 자기 회사의 사업계획서 등 기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주식회사 코리아 세븐 상품기획부 차장 이영우 씨(34)를 구속하고 재무관리부 과장 박성욱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자신의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동양마트와 주식회사 유공 등에서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성, 유통업계에 뛰어들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작년 12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코리아 세븐 회사의 유통조직개요, 사업계획서, 물품판촉일정표 등의 사본을 넘겨주고 그 밖의 회사 기밀사항을 구두로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

료와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설명을 들은 데 대해 수사기관의 공식발표가 아니라며 상당성을 부정했으나 이 사건에선 소정의 절차에 의한 발표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달리 보고 있는 것이다. 전자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경찰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인 반면 이 경우는 기자들이 담당검사에게 취재를 요청, 내용을 확인했다는 차이밖에 없다. 법원은 검사의 설명에 보다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판결은 나아가 "검사로부터 취재한 피의사실을 기사화하는 경우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아니하고 보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의 취재 관행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진희경 씨가 문화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사의 확인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이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판단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소송이 제기됐더라도 상당성이 인정돼 손배 책임이 부정됐을 것으로 보이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 소개한다. 지난해 9월 19일에 나온 부산지법 판결이다.[18] 부산지법은 간첩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서모 씨 등 5명과 그 가족이 3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른바 '자주대오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당성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소가 제기되지 않은 다른 신문의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소개하며 이들 매체의 기사에 대해서는 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상당성이 인정돼 책임이 부정됐을 것이란 취지의 판단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가 지적한 내용은 이렇다. 즉 "서모 씨 등의 간첩혐의부분은 피고들 이외에도 한겨레신문·조선·동아·한국일보·국제신문에도 보도되었으나 이 신문들의 기사는 부산지방경찰청 등의 수사결과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서씨 등의 혐의 내용을 보도하면서도 변호인과 가족들의 주장에 관하여도 소제목과 본문에 그 주장 내용을 실어 보도하였고, 기사의 분량이나 표현이 피고들 것보다 완화된 모습이다. 동아일보의 기사 중엔 검찰이 '아직까지 이들이 간첩활동을 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경찰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까지 싣고 있다"고 하고 있다. 수사결과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사가 작성돼 있고, 변호인과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제목까지 뽑아가며 내용을 다뤄 균형을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 검찰의 유보적인 태도를 기사에 포함시킨 점을 평가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원고들은 이들 기사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내지 않았다.

V. 공공성 · 공익성

위법성 조각사유 중 진실성이나 상당성보다도 법원 실무상 먼저 판단하고 들어가는 게 보통인 공공성과 공익성은 상당성과는 달리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실명으로 보도할 경우는 주의를 요한다. 대법원은 범죄 혐의 보도와 관련, 익명보도의 원칙을 내세워 실명을 적시한 경우 공인이 아닌 이상 공공성·공익성을 부정하고 있다.

살인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유모 씨 등이 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실명이 적시된 해당 기사의 공공성을 부정하고 있다.[19] 또 "유씨 등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일반 국민들로서는 피고 언론 각사가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들이라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 언론 각사가 유모 씨 등의 신원을 명시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초상을 보여주면서 한 각 적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18) 부산지법 99가합9588(2000. 9. 19)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8집, p.243.
19) 부산지법 99가합9588(2000. 9. 19)판결, 『국내언론관계판결집』8집, p.243.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서는 재야 법조계 등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서울지법은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의 김훈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 김모 중사와 그 가족이 서울방송과 동아일보·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가 공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후 "김씨의 실명과 사진을 적시하면서 한 피고들의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돼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20] 재판부는 "공인에 대한 평가자료로 제공한다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등의 사회에 대한 지대한 정보의 이익이 없는 이상은 실명이나 신상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에 중점이 놓여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VI. 결어

이상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용을 사례별로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기사를 쓰면 명예훼손 시비를 피할 수 있다. 또 언론의 특성상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설령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공공성·공익성을 갖추고 진실한 내용을 다루거나 적어도 보도 당시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만큼 취재를 충실히 하는 게 명예훼손 소송을 피하는 요체라 할 수 있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돼 면책될 공산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론 이렇다 하더라도 실제 취재 현장에서 명예훼손의 우려가 없는 예방적인 기사를 쓰고 완벽한 취재로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법원의 언론에 대한 기대 수준이 워낙 높아 언론으로서는 명예훼손을 피해갈 방법이 별로 없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사건마다 법원의 해석이 다르고 아직 통일돼 있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명예훼손 예방의 기준을 알고 싶은 언론으로서는 혼동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또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포섭하는 과정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언론의 취재 현실에 대한 이해도 충분치 않아 보인다.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면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싶다.

언론도 단순히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선정적인 제목 등은 지양하는 보다 성숙된 자세로 보도에 임해야 할 것이란 생각이다. 수사 단계를 앞서가지 않는 신중한 접근과 혐의 내용에 대해 더욱 중립적인 표현을 적용함으로써 독자들의 예단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근거 없이 수사기관의 발표 내용을 각색, 과장하는 것은 물론 안된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언론의 관행에 비춰 매우 높게 형성돼 있는 게 현실이나 언론으로서는 거액의 손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기준을 맞춰가는 방향으로 취재와 기사 작성 시스템의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못지 않게 언론의 입장에서 소송을 피해갈 수 있는 예방 분야에 관한 연구가 법조계와 학계, 언론을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

20) 서울지법 99가합30768(2000.8.23)판결, 『국내언론관계판결집』 8집, p.149.